

의안 번호	2000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8. 26.(금) 문기호 의원 외 8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4.(금)

2. 제안이유

-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신청(안 제3조)
- 다. 마을세무사의 역할(안 제 4조)
- 라. 위·해촉 및 임기(안 제5조)
- 마. 이용대상(안 제6조)
- 바.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안 제7조~제8조)
- 사. 이용요금, 수당(안 제9조~제10조)

4. 근거법규: 「세무사법」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근 거 법 규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떨린 업무